

-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최관술 의원 외 20명

나. 의안번호 : 제2049호

다. 제출일자 : 2017. 8. 16.

라. 회부일자 : 2017. 8. 17.

## 2. 제안사유

-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전액 출자하였고, 공익적 목적의 사업시행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뿐만 아니라 해임기준 등을 반영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사장의 해임기준을 반영함(안 제12조)

나.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33조 삭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22 ~ 8. 29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동의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뿐만 아니라 해임기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수용
- 서울시의 공사 재산의 무상사용 관련 조항은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여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수용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의 해임기준을 반영하고, 서울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 법인격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2조가 임원의 연임기준만을 규정하고 임원 해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연임과 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5개 공사·공단 중 조례에 시장의 무상사용 관련 규정이 있는 기관은 총 3개 기관<sup>1)</sup>으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은 취지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있는 상황임

조례명	소관위원회	발의내용	발의의원	회부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위원회	· 사장의 해임기준을 추가 ·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	최관술 의원 외 20명	2017.8.17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위원회			

1)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총 3개 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총 2개 기관은 관련 조항 없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규정<sup>2)</sup>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이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사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sup>3)</sup>,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시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며 관련 조문을 삭제<sup>4)</sup>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삭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다만, 공사의 자본금과 지하철역사, 차량기지, 레일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은 서울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 것으로 서울시는 동 규정에 따라 현재 9건의 공사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며<sup>5)</su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sup>6)</sup>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가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2)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법제처, 2014.12월

4) 부산(2015.11.4.), 인천(2015.9.30.), 대구(2015.12.30.), 대전(2015.12.31.)

5)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신도립고~도립천간 보행경사로,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장,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3개소,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 저소득층 재활 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임대추정액 약 242백만원/년

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